



공장 내 이동 중 지게차와 충돌

제품이 담긴 스틸박스 적재함(1080kg)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창고로 운반중 보행중이던 피재자를 치어 사망



발생 원인

- 근로자 보행용 출입구 및 보행통로 미확보
-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 운행

TIP

안전작업

1 보행자용 출입구 및 보행통로 확보

- 주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 및 이동 경로 상에는 보행자용 출입구와 보행통로 설치

2 지게차의 안전한 사용

-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시야를 가리는 대형 적재물 운반 시에는 후진하여 운행



보행자 통로 확보



지게차의 안전한 사용

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(작업장의 출입구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(접촉의 방지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(화물 적재 시의 조치)





공장 내 이동 중 지게차와 충돌

보행자용 출입구와 보행통로를 설치하세요!

